

참고자료 2. 2004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안내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가. 시설자금 (동일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함)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비율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집단에너지사업	지역냉난방 사업	172,000	소요자금의 100%이내	연리 4.75%	8년거치7년 분할상환	-	
	소규모집단 에너지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사업	252,860	소요자금의 100%이내	연리 3.50%	3년거치5년 분할상환	100억원 이내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			연리3.50%(ESCO 신용대출시는 최고 6.50%)	5년거치5년 분할상환	100억원 이내 (동일투자자당)	
	ESCO투자사업				연리 3.50%	3년거치5년 분할상환	250억원 이내 (사업장당 150억원 이내)
	자발적협약 기업투자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 결정한 투자조합이 중소 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150% 이내	연리 3.50%	3년거치5년 분할상환	50억원 이내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소요자금의 100%이내	연리 3.50%	3년거치5년 분할상환	200억원 이내 (사업장당 100억원 이내)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100억원 이내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						100억원이내 (단, 전기대체 냉방시설은 동일시스템을 적용하는 건물당 100억원 이내)
	수요관리 투자사업						1주택당 1,500만원 이내
	주택단열 개수사업			연리 4.75%	2년거치3년 분할상환	300억원이내(건설허가 사업장당 150억원 이내)	
	건물효율등급인증 지원사업			연리 3.50%	2년거치2년 분할상환		
대체에너지보급 사업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50,000	소요자금의 100%이내	연리 3.50%	3년거치5년 분할상환	150억원 이내	
	태양열온수기사업				2년거치3년 분할상환	시설당 300만원 이내	
전력산업 기반기금	축열식냉방설비	10,500	소요자금의 100%이내	연리 3.50%	3년거치5년 분할상환	100억원 이내	
합 계		485,360					

- ※ 공단은 자금집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사업 또는 분야별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 ※ 접수순 지원임
- ※ 전기대체냉방시설은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총지원한도액은 100억원이내
- ※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소수력 설비의 경우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황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기전설비는 소요자금의 100%이내, 토건설비는 25%이내를 적용한 총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한다.
- ※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중 “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함
- ※ 이자율과 대출기간에 관해 에·특회계 운영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특회계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나. 운전자금

사업명	대 상	지 원 비 율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대 출 기 간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하는 중소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 중소 ESCO	소요자금의 90%이내	연리 3.50%	1년거치2년 분할상황	5억원 이내
	· 중소창업기업				10억원 이내
대체에너지 보급	대체에너지이용시설 생산자 및 A/S를 위한 공동망 관리자, 대체에너지생산공급자				5억원 이내

- ※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1회에 한한다. 단,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 운전자금은 해당 사업의 시설자금의 지원금액에 포함하여 운영
- ☞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됨

대출 가능 자금범위(소요자금)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하며, 보수비는 기추천액의 50%이내)
- ※ 보수비 지원대상 :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에 한함.
-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하“지자체등”이라 한다) 및 이들 정부·지자체등이 납입자본금의 8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하 “정부출자기관”이라 한다)이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부지의 매입비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비용을 포함.
- 또한, 지자체등 및 정부출자기관이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공기업 구조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연도 이전에 완공된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

□ 운전자금

○ 당해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기준하여 2회전(6개월분) 소요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용자 취급기관(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그 회원조합 포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로서 산은캐피탈, 연합캐피탈

자금지원 대상자

